

- ⑥ 시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라 산정된 시설물별 존치시설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.
 <개정 2022. 7. 19.>
 [제목개정 2022. 7. 19.]

제34조의2(존치시설부담금의 징수절차 및 납부 등) ① 시행자가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존치시설부담금을 내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명시하여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알릴 것
 - 가. 공공시설의 명칭
 - 나. 설치비용의 총액
 - 다. 내야 할 금액
 - 라.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
 2. 제1호에 따른 서면 통지 전에 미리 해당 존치시설의 소유자의 의견을 들을 것
- ② 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존치시설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.<신설 2022. 12. 9.>
- ③ 존치시설부담금의 납부기한은 이를 부과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.<신설 2022. 12. 9.>
- ④ 시행자는 존치시설부담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그 존치시설부담금을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.<개정 2022. 12. 9.>

[본조신설 2022. 7. 19.]

제35조(이주자 등의 취업) ① 시행자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이주자 또는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업희망자의 구직표 및 입주기업체의 구인표를 작성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나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구직 또는 구인을 신청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구직 또는 구인 신청을 접수한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나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구인자에게는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의 목록을 제시하고, 구직자에게는 구직조건에 적합한 구인자의 목록을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취업을 알선하여야 한다.

제36조(준공인가) ① 시행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준공인가신청서를 해당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시행자의 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) 및 주소
 2. 사업의 명칭
 3.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
 4. 사업시행기간
 5. 토지이용계획
 6. 기반시설계획
- ②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.<개정 2010. 10. 14., 2016. 8. 31., 2022. 1. 21.>
1. 준공설계도서(준공사진을 포함한다)
 2.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
 3. 법 제36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조서와 도면(법 제2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시행자인 경우에는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)
 4. 환지계획서 및 신·구 지적대조도(법 제34조에 따라 환지를 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)
 5.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46조 및 제3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자가 취득할 대상토지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 등의 내역서(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)